

보건복지부

시정요구

제 목 사설 장사시설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진주시, 밀양시, 함안군, 하동군

내 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법인 묘지, 사설 화장시설, 사설 봉안시설, 사설 자연장지의 설치자·구성자·관리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는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운영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 등에게 보고²⁰³⁾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4년 이후 경상남도 내 사설 장사시설의 운영 상황을 확인한 결과, 5개의 시설에서 1회 이상 운영상황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구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하고, 결산이후 관리금 적립 및 사용내역을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4년 이후 경상남도 내 사설장사시설을 관리금 적립 현황을 확인한 결과, 2개 시설에서 재해 등에 대비한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었다.

20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5.7.20)에 따라 2016년도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2017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2014년, 2015년은 매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 보고)

조치할 사항 진주시장, 밀양시장, 함안군수, 하동군수는

상황보고 미실시 등 법령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혹은 같은 법 제31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